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 - 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,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 명시
 - 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5년 연장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'2021년 3월 16일까지'로 명시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
- 다.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
 - 교육지원과장 ⇒ 교육청소년과장
 -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⇒ 교육부장관
- 라. 일부조문 수정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삭제
(2015.12.10 공포, 2016.1.1 시행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제외 법령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5. 11. 19. ~ 12. 9. (제출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
다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제외 법령

라.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: 적정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1.14)

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사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일반 회계예산”을 “일반회계 예산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 중 “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”를 “제4조에 따라 2021년 3월 16일까지로”로 한다.

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 금액을 산정하여 <u>일반 회계예산</u>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기금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일반회계 예산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<u>5년으로</u>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<u>제4조에 따라</u> <u>2021년 3월 16일까지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기획예산과장, <u>교육지원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교육청소년과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⑤ ~ ⑦ (생 략)

제5조(대여대상) 기금의 대여대상
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
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
의 전문대학, 대학(대학교 포함)
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
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
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대여대상) -----

-----교육부장관-----

-----.

[별지 제2호서식]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청소행정과 박경미
연 락 처	02-3153-9213